

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·국립부곡병원

마약류 및 남용약물 중독자 치료재활을 위한 업무협약서

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·국립부곡병원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은 마약류 및 남용약물 중독자 치료, 재활과 사회복귀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조 【목적】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약류 및 남용약물 중독자(사범 포함)의 치료, 재활과 사회복귀 활동에 성실한 자세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【협력내용】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.

1. 마약류 및 남용약물 중독자(사범 포함)의 치료, 재활과 사회복귀사업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.
2.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립부곡병원의 치료보호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치료 의뢰하며, 중독재활센터 입소자의 재발시 국립부곡병원에 의뢰하여 적절한

치료 및 관리를 받도록 협력한다.

3. 국립부곡병원은 치료한 중독회복자에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홍보하고 입소 의뢰하여 적절한 재활 및 사회복지 지원을 받도록 협력한다.
4. 마약류 및 약물남용 중독자(사범)의 치료, 재활 및 사회복지관련 연계(의뢰 포함), 연구, 재활교육 등 중독자의 성공적인 치료,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서로 협력한다.

제 3조 【협력지원】 양 기관은 이를 계기로 마약류 및 남용약물 중독자 치료, 재활과 사후관리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마약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.

2015년 6월 12일

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
이사장 전 영 구



국립부곡병원
원장 이 영 렬





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
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

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등대인터내셔널 상호협력의향서



등대인터내셔널

(재)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(사)등대인터내셔널은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의향서는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성공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호 의사를 명문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기본원칙)

양 기관은 사업을 통하여 상호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.

제3조 (신의 성실)

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.

제4조 (각 당사자의 협력 분야)

본 협회에 의하여 양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상호 지지 및 후원, 공동 홍보 사업
2. 정부 정책 제안 및 예산 확보 사업
3.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중독 예방, 치유 프로그램 연구 개발 사업
4.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 복귀 재활 사업
5. 상담,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사업
6. 중독 재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공연단 운영
7. 기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사업 및 분야

제5조 (유효기간)

본 의향서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,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3년간씩 연장된다.

제6조(비밀보호)

양 기관은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상호 교류하는 자료 및 정보를 본 의향서가 정하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.

제7조(비용)

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유효기간 동안 소요된 당사자의 제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대방은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.

제8조(의향서의 변경)

양 기관은 상호 업무제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본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효력 발생일)

본 의향서의 효력은 양 기관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제2조(의향서의 보관)

본 의향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6월 17일



(재)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
이사장 전 영 구

Chun

(사)등대인터내셔널
이사장 김 낙 기

김낙기

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·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업무협력 협약서

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(이하 “양 기관”)은 상호 이해 및 호혜의 원칙 기반 위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지식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폐해 예방 및 마약류 안전관리를 선도하고 양 기관 발전에 상호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1. 교육 · 연구 · 기술 · 인적 교류에 관한 협력
2. 마약류 안전관리와 관련한 연구지식· 정보· 자료 공유
3.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폐해예방활동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4.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사항

제3조(협약 이행에 따른 세부사항)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협력을 위한 사항이 추후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업무협약서를 마련하도록 한다.

② 공동사업 수행에 소요될 비용의 부담은 사업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기관별 역할) 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위해성 정보 및 각종 교육자료 등 마약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.

②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에서 수집된 마약류 안전과 관련한 통계자료 및 분석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.

제5조(협약의 준수) ① 본 협약서의 내용은 양 기관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.

② 양 기관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서 정한 업무협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, 제공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, 본 협약 유효기간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협약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협약기간 중이라도 합의하에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) 본 협약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위 사항에 대하여 협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8월 11일

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

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

이사장 전 영 구

원장 구 분 기



